

의안번호	2212647
의 퇴 인	신장식의원
회 답 일	2025.9.25.
추계번호	25D479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 면접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7억 5,400만원씩 총 87억 7,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임용시험 응시자 면접수당 지급 (안 제81조의3)	면접인원	35,070	35,070	35,070	35,070	35,070	—	—
	면접수당	0.05	0.05	0.05	0.05	0.05	—	—
	추가재정소요	1,754	1,754	1,754	1,754	1,754	8,770	1,754

주: 본 추계는 행정안전부 발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른 신규임용 인원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이며,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1조의3(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수당의 지급)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면접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제1항)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임용시험 공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81조의3(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수당의 지급)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공무원 신규임용의 면접시험 응시자 인원에 면접수당 단가를 곱하여 추계함
- 본 추계에서 공무원 신규임용의 면접시험 응시자 인원은 행정안전부 발간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른 신규임용(공채, 경력임용, 특수경력채용)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그 밖의 시험실시기관이 자체적으로 임용하는 인원은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공개경쟁임용 인원(평균): 18,658명(93,288명/5년)
 - 경력경쟁임용 인원(평균): 4,399명(21,995명/5년)
 - 특수경력직채용 인원(평균): 323명(1,617명/5년)

[표 2]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2020~2024년

(단위: 명)

구분		일반직			별정직	소계
		일반	전문경력과	일반 임기제		
2020	신규임용	23,696	57	1,732	224	25,709
	공개경쟁임용	20,861				20,861
	경력경쟁임용	2,835	57	1,732		4,624
	특수경력직채용				224	224
2021	신규임용	25,742	55	1,765	207	27,769
	공개경쟁임용	23,029				23,029
	경력경쟁임용	2,713	55	1,765		4,533
	특수경력직채용				207	207
2022	신규임용	21,213	46	2,483	735	24,477
	공개경쟁임용	18,907				18,907
	경력경쟁임용	2,306	46	2,483		4,835
	특수경력직채용				735	735
2023	신규임용	17,210	70	2,702	191	20,173
	공개경쟁임용	15,572				15,572
	경력경쟁임용	1,638	70	2,702		4,410
	특수경력직채용				191	191
2024	신규임용	16,571	28	1,913	260	18,772
	공개경쟁임용	14,919				14,919
	경력경쟁임용	1,652	28	1,913		3,593
	특수경력직채용				260	260
소계	신규임용	104,432	256	10,595	1,617	116,900
	공개경쟁임용	93,288				93,288
	경력경쟁임용	11,144	256	10,595		21,995
	특수경력직채용				1,617	1,617

자료: 행정안전부 발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본 추계에서 면접수당의 지급 대상 인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제3항 제2호·제3호¹⁾와 제8항제1호²⁾를 고려하여, 연도별 면접대상은 임용인원의 1.5배 수와 같다고 가정함
 - 면접시험 응시 인원: 35,070명(공채 27,986명+경력임용 6,599명+특수경채 485명)
- 본 추계에서 면접수당 단가는 경기도의 청년면접수당(면접 1회당 50,000원)을 참고하여, 면접시험 1회당 5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면접수당의 추가재정소요는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응시 인원(35,070명)에 면접수당 단가(50,000원)를 곱하여 추계함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 면접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7억 5,400만원씩 총 87억 7,000만원으로 추계됨

-
- 1) 제5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③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2. 제2차 시험의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 2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총득점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3.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
- 2) 제5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⑧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차 또는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
1.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단서 생략>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임용시험 응시자 면접수당 지급 (안 제81조의3)	면접인원	35,070	35,070	35,070	35,070	35,070	-	-
	면접수당	0.05	0.05	0.05	0.05	0.05	-	-
	추가재정소요	1,754	1,754	1,754	1,754	1,754	8,770	1,754

주: 본 추계는 행정안전부 발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른 신규임용 인원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이며,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행정안전부 발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른 신규임용 인원과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단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이며,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61	jsy@na.go.kr